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황석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 Legal Review on Abuse Cases of Virtual Currency and Legal Responses

Suk-Jin Hwang

Law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장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Virtual currencies have emerged along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 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benefits of a security-enhanced block chain resulting from individual trading, decentralized from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misuse of virtual 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due to its anonymity, is vulnerable to financial crimes, such as ransom-ware, fraud, drug trafficking,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Use of virtual currencies can facilitate criminals avoid detection from investigative agencies.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continues to address these concerns, and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also announced a self-regulation proposal. However, a fundamental solution remain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regarding abuse of virtual currency and to identify a practical system for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and to institutionalize a governance system, multilateral cooperation is required. Although the restrict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regarding minors and foreign trade,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al-name system are considered promising prospects, many problems remain. Virtual currency is not a simple digital item but a method of redesigning the function of money. Coordinated efforts are needed globally to be able to further activate the positive aspects concern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Keywords : Consumer protection, Discipline of virtual currency, Money Laundering, Ransom ware, Virtual currency abuse cases

*Corresponding Author : Suk-Jin Hwang(Sungkyunkwan Univ. Law School)

Tel: +82-10-4750-0300 email: def0000@naver.com

Received December 8, 2017

Revised (1st December 26, 2017, 2nd January 9, 2018, 3rd January 22, 2018, 4th January 25,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인 열풍 중심에 가상화폐의 비트코인이 있다. 경영모델의 진화와 IT기술, 스마트결제가 보편적으로 분포됨에 따라 가상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상화폐는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block-chain)의 기술이 접목된 최신 디지털 암호화폐로서 기존의 인터넷 거래 시 액티브엑스(Active-X)와 공인인증서 등의 추가 인증수단의 불편함과 금융기관의 송금수수료의 과다지출 등이 맞물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은행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밀림이 우거진 정글이나 뜨거운 사막 지역 등 은행 점포나 ATM기를 아예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환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은행에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 속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가상화폐에 대하여 다양한 신기술이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악용사례를 조사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는 거래의 가치저장수단 또는 매개체 등으로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발행기관의 화폐 형태가 아닌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청사진만을 제시하게 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무이하다. 비트코인은 탈정부·탈중앙은행에 의해 지급과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 기존의 화폐와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P2P(Peer to Peer) 형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마약, 무기구입 등의 불법거래, 북한 혹은 테러집단의 자금 조달, 조세포탈, 돈세탁,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높고, 가격 불안정이 매우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자 각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2013년 2월 유럽감독청은 암호화폐 사용으로 인한 법적보호 장치의 부족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

였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점은 최근 국가별로 가상화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여러 종류의 악용사례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7월 31일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2. 의의

2.1 개념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비트코인(Bitcoin), 리플(Ripple), 리더코인(Litecoin), 피어코인(Peercoin), 네임코인(Namecoin) 등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되고 있다. EU와 미국, 일본에서는 디지털 가치 저장 방식과 교환의 매개체로 통용하는 모든 종류를 가상통화로 정의할 내린바 있다[5]. 우리나라도 빗썸, 코인마스터, 업비트 등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법정화폐의 발행권리 및 단위 등을 정한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제47조의 2(화폐의 단위),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관련 규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5호의 전자화폐의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를 정의하려면,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은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 Table 1이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e-money and virtual currency

Category	E-Money	Virtual Currency
Applicable laws	O	O
Supervisory director	O	X
Issue permit Monetary	Necessity	Needless
Provision	Stable	Unstable
Protection of funds	O	X
Calculating unit	Legal Money	Virtual Currency
Risk	Operational Risk	Legal, credit, Operational, Risks, Etc.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정부부처 등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가진 다양한 속성, 발전성, 특수성에 따라서 법적 개념과 지위를 부여한 입법·사법·행정 기준은 아직 미비하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강제 통용성이 없고,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 잔액을 환급 받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을 보더라도 가상화폐는 기존 법체계에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보통 화폐나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 하지도 않는다.

2.2 법적 성격과 규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가상화폐 정책과 운영방향, 규제기관의 권한의 배분이나 지정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국가 간의 법정통화와의 관계와 영업행위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방안, 범죄적 사용 가능성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 정책을 마련한 국가는 드물다.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의 법·제도적 쟁점 가운데 가장 모호한 부분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정의할 것인지 자산, 유통증권 등으로 정의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특정한 발행주체와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없고,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의 금전으로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개정 자금 결제법에서 블록체인을 상대로 사용·매각·상호교환·구입이 가능한 재산적 유·무형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여 화폐로 정의하였다[1]. EU와 영국은 유통증권, 화폐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고 재화·자산으로 정의하고, 공정위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해석은 재화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표 되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비스 유형별 업체 규정을 통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통화 거래 및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의무와 금지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해킹, 서버다운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해결 등에 대한 해결 정책은 없다.

3. 가상화폐 악용사례

3.1 익명성

3.1.1 익명성의 장단점

가상화폐는 별도의 본인 인증절차가 없어도 파일처럼 보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개념 기술이다. 가상화폐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익명성을 활용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로부터 별도의 거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QR코드로 가상화폐를 보낼 수 있다[2].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인하와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9]. 지급한 가상화폐는 전자 파일과 달리 전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며 복사나 조작은 거의 불가능하며 취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수단의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어서 양면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은 P2P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익명 또는 가명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익명성은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6]. 비트코인의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특징상 불법적인 물품(마약, 무기 등)을 구매하고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일종의 암호화 화폐이기 때문이다. 암호화 기술을 통해 한 사용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 올라와 있는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기에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이도 해당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특수한 기술 덕분에 익명성으로 상당수준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측면도 있다. 익명성을 악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게 된다.

3.1.2 자금세탁

비트코인의 가상화폐는 자금세탁을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거래의 특성은 사이버상의 거래에 있어서 ‘현금’과 같은 성격을 가상화폐에 부여하게 된다. 가상화폐의 거래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초반까지만 하여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거래와 연관된 것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실크로드(Silkroad.com) 이었다[7]. FBI에 의해 실크로드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에도 유사한 불법거래 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거래의 활용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익명성에 기인한 불법거래 유형은 자금세탁 범죄와 연계되어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사례로 2014년 1월 미국 정부는 “BitInstant”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찰리 슈렘이라는 CEO를 불법 자금세탁, FinCEN(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의심거래행위보고의 고의적 누락, 미인이 자금이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이 있다[10]. 찰리 슈렘의 혐의는 자금세탁들의 불법거래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가상화폐와 현금을 익명으로 중개하는 불법거래소 운영자들과 거래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즉, 사이버상에서 블랙마켓인 실크로드 등에서 가상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거래업자의 현금 교환을 지속적으로 도운 혐의였다[4]. 자금세탁을 원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거래소 운영자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그 현금으로 BitInstant와 같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고액의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이다.

3.1.3 랜섬웨어와 파밍

익명성에 기인한 탈취형 악용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랜섬웨어다. 개인 PC나 법인 PC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암호 해제를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법이다[11].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힘들어 랜섬웨어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사용자는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했지만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고 정상사이트로 오인한 사용자는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만 이미 해당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어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탈취되고, 실제 자신의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인출된다[13]. 개인 PC나 법인 PC 사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나 휴대폰이 악성코드에 의해 감염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3.1.4 물품구매 사기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인데 私人間에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고가의 상품 등을 저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련 대금을 가상화폐나 다른 가상화폐로 받는 후 이를 다시 환전하여 금액을 편취하거나 타인과 거래하여 매매한 후 다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등 수차례의 거래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유형의 범죄이다[12].

대부분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거래인줄 알고 가상화폐로 거래를 송금하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고 가상화폐만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는다.

3.2 국제성

3.2.1 조세회피

가상화폐 거래의 시세차익으로 취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익명성으로 처리되면 은행계좌가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고의 의무가 없기에 조세도피처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8]. 그래서 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송금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의무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규제가 매우 미비하다. 특히 가상화폐는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가상화폐라는 가상화폐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상화폐를 관리 감독할 주체가 불분명하여 각국에서 가상화폐 서버와 공장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고 있다[14]. 만일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수취했다고 한다면 과세 당국이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해당 거래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없다면, 그 거래는 ‘숨은 거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계속 거래된다면 과세의 쟁점이 될 부분은 사업 소득세, 양도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과 재화의 법적 정의를 볼 때 가상화폐 공급에 대한 과세근거가 부족하여 납세자 등의 자발적인 신고와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용 보고를 위해 별도의 세법상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2.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를 외국으로 송금(인도)할 경우에 있어서 관계당국(한국은행)에 대한 보고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7월 18일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은행권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가상화폐 등을 해외로 인도할 경우 인도 자체를 해외송금업무로 간주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2017년 11월 1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불법 외환거래업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15].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 120억원을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였다. 중국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한국으로 보내면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이를 매매하여 현금화한 후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전달하는 범피수범을 자행했다.

3.2.3 테러단체의 자금 조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테러자금을 조달한다. 가상화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비자금, 범죄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울러 국제테러단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는 디지털 가상화폐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16].

단순한 테러단체에서 이슬람 정식 국가를 지향하는 ISIS가 교육기관이나 병원 건립 등을 넘어 2015년 6월 자체 통화를 발행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적극 활용키로 하였는데, 그 예로 IS 영문 홍보 블로그에 “가상화폐는 사리아(이슬람 율법)에도 맞고 서방 정보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세계 어디서든 바로 지하드 전사의 주머니에 수백만 달러를 보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3.3 투기성

3.3.1 유사수신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사수신이란 정식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신용대출을 해주는 행위로 수신·여신

행위라고 한다. 과거 유사수신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첨단 금융기법을 사칭해서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장상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에 투자, 해외불법 다단계 업체, 합법적 협동조합(산양삼, 버섯, 블루베리, 양돈)을 가장한 투자유인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사칭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악용사례와 관련하여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범피수범이다. 즉, 국가가 정식으로 승인한 금융기관 외에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3.3.2 불법도박

가상화폐로 기존 화폐처럼 인터넷 불법도박을 할 수 있다. 이른바 ‘사토시다이스(SatoshiDice)’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의 도박은 오직 서비스로만 이루어지며 베팅을 하면 즉각 반영되는 구조이다. 이용자 각자에게 부여된 서로 다른 주소(지갑)는 서로 다른 당첨가능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승산 수치를 지닌다. 이러한 구조는 도박 경기를 위해 어떠한 계좌나 예치금도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베팅 주소를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곧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 압류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하는 이상 위의 작동과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서버가 폐쇄되더라도 이용자들은 당장 손실을 가져오는 보유계좌의 잔액이 없는 것이다. 미국 내 법원이 가상화폐를 사용한 도박을 도박금지에 대한 방어책으로 보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에서 도박사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회(chance), 보상(prize), 대가(consideration)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가상화폐가 대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인데, 미국의 법원들은 종전에도 ‘대용물대가(token consideration)’ 사례에 대해서 대가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17]. 엄격한 규제와 일반적인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법원은 가상화폐로 표시된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도 도박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3.3.3 물지마 투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2017.12.19. 유빗 파산)해서 거래소를 이용

했던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더욱 문제인 것은 기존의 외부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인데, 즉 보안을 뒷전으로 한 채 무조건 거래소 이용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만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다. 이처럼 거래소가 보안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피해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갑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어 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묻지마 투자보다는 거래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업소는 자연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로만 국한될 소지가 있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유치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4. 가상화폐 악용사례의 법적 대응방안

4.1 거래법적 대응

가상화폐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거점을 두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탈집중화 방식의 P2P 네트워크 거래시스템이 각각의 국가별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3]. 또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감독과 감시를 하여도 법적기반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서버나 통화 등을 이용하면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는 국가 간의 협업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인접 국가들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가상화폐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채굴하고 있는 상황인걸 알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간주하여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정부는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미국, 독일, 싱가포르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국제결제은행(Bank International Settlement)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기반의 국제기준과 이를 관할하는 산하기관을 두어야한다. 각 국가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산하기관에 근거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자국 내 가상화폐에 대한 관

리와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2. The status of national regulation

nation	Key Point
United States (Product, arti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defined the virtual currency as an asset or derivative in 2015 -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banks will be approved to run a business on tasks related to the virtual currency · The IRS(Internal Revenue Service) is considering taxation on revenue based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k companies to keep their lists of clients · The Treasury Departmen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relevant companies pursuant to the Act on Money laundering
The United Kingdom (Personal cur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lawful money but private currency · Personal currency issuers and companies risk liability and prevent laundering of funds Accordingly, the registration and residence of the trader shall be registered.
Russia (Financial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y strict restrictions, however, in recent two years, some signs of abating. · Strictly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shing and laundering, all transactions are subject to supervision. ·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us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t central bank
Singapore (non-proprietary as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tual currency is an asset but not a payment method · Financial authorities have no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the transaction safety of virtual currency, but the company All statutory duties shall be fulfill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 The authorities study the basic laws of payment of virtual currency
Switzerland (non-proprietary as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anies related to financial authorities are subject to supervision · Encommended as a means of funding and implementing voluntary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Financial Liability Act

아울러 국제결제은행 산하기관은 가상화폐 거래현황과 관련 정보기술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별도

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결제은행이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대응과 공조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산하기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간 공조와 협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급하게 마련한 규제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유사수신 행위규제법 개정안)이다. 2017년 12월 14일 국무정무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있다.

4.2 사업법적 대응

4.2.1 익명성 대응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로 특정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률적으로 불법화되는 경우 해외에서 이미 개발 유통 중인 가상화폐 외에,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능한 신 개념의 핀테크 사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본인 실명확인이 우선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고 전자금융 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이와 동등하게 안전성이 있는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적 활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제범죄의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관리하고 규율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법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불법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적 법규 위반자나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에 대하여 우수 사업자나 기관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2 트랙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2.2 국제성 대응

가상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때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방법은 가상화폐를 자체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나 거래시 확인되었던 ID나 IP, MAC, IMEI, 거래소, 채굴장 등을 기반으로 추적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한 개의 IP에서 여러 거래가 발생한 내역이나, 특정 ID에서 다량의 가상화폐가 지속적으로 거래된

다던지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인입되는 IP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특정 IP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한 대금이 특정계좌로 입금된다면 관계당국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조세 회피, 환치기, 테러자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악용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악용 범죄를 근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상화폐 양성화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가상화폐의 문제점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법규를 통하여 대응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현실 경제에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장가치도 보유하고 있기에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4.2.3 투기성 대응

가상화폐의 거래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금융당국에 둘 필요성도 있다. 위와 병행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정보, 거래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되는 다양한 시나리오(투기자본, 묻지마 투자 등)와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거나 사전에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검출하여 대응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내용을 즉시 통지하거나 금융기관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FDS는 그 동안 주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에서 보험사거나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하였다. 그러나 보이 스피싱과 해킹,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서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 특히 초기에는 신한은행과 부산은행만 적용되어 도입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앱카드 부정사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차단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항목에 FDS구축을 권고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FD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4.3 소비자 보호

가상화폐 자체가 해킹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거래소가 해킹되어 고객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탈취되거나 부정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마운틴곡스사 파산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거래소는 해킹 보안에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으나 탈취가 되면 정보보안과 소비자 보호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2017년에만 네 번의 해킹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고난 후에는 모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파산 신청한 업체의 경우에도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보안을 강화하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우선 계약서상에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내부시스템의 물리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직원의 고객정보를 함부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망 분리를 통하여 회사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전산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인입되는 IP나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버를 제차 확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별도의 고객의 정보는 취급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취급인가자 제도를 두어 각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17. 7.31)안에는 매매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을 더욱 명확히 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규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피해사례를 공지하여 선량한 투자자나 이용자에게 피해의 심각성을 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해당 업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해당 업체가 유사수신 업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전화 “1332”와 연동하여 유사수신 업체에 대

한 상담 및 신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4.4 소 결

우리나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와 같은 신개념 화폐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하는 물음에 대해 EU 및 회원국들의 입법 상황을 벤치마킹 하면 올바른 규제가 될 수 있다.

2016년 5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블록체인에 대하여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을 채택토록 권고하고 있다. EU의 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각 국가들마다 상이한 기술적 용어를 정의하여 국가 차원에서 문제점들마다 해석과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현 단계에서 선제적 규제(Preemptive Regulations)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모니터링(Precautionary Monitoring)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사회적 유용성 및 담론형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응용한 새로운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금융당국과 국가기관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 새로운 실험과 혁신을 권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또한 금융업계나 관련업계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이슈들은 금융당국에 전달되고, 금융당국은 이런 이슈를 즉시 검토하여 시장에 확실성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기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법자금의 조달과 이동 등 자금세탁 혐의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범규 위반 업체 및 관련자에 대

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하며, 범규준수 업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의 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조세탈루, 인터넷 도박, 사기 등과 같은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가 국내에만 한정되어 거래가 된다면 통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양은 계속 증가하여 자칫 국내 화폐가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등이 외환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인 열풍 속에서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자국 화폐에 주는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5. 결론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자금세탁, 랜섬웨어, 피싱, 물품구매 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수단과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외국으로 송금도 가능하며 테러단체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에게는 고액의 수익을 가장한 유사수신의 검은 유혹이 될 수도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늘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정부의 규제방안과 악용사례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는 유래 없는 가장 강력한 파장과 이슈로 열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고자하는 무단한 노력 중에 핀테크, AI 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혁명인 비트코인을 주시하게 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국가들 중 최상위에 우리나라가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주로 현대기술에 열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비트코인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이 주변 국가에 비해 미흡하거나 기술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공통표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대중,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가상화

페의 법·제도적 쟁점 가운데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사수신 행위, 사기, 해킹, 조세회피, 탈세 등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좀 더 발전성 있는 가상화폐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상화폐의 등장은 단지 화폐정책의 개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사회·정책변화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는 첫째, 거래법적 대응에서는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거점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각 국가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관리·감시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법적 대응의 익명성은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성과 투기성은 대응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가상화폐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용자나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 세계가 새로 등장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정책이라면 앞서 다루었던 악용사례만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코인가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가상화폐 투기판으로 변질된 거래소 폐쇄 검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계약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나 해결 방안이 없다. 넷째, 우리나라의 코인가격과 미국 코인가격 차이는 약 20% ~ 40%로인데 코인거품으로 봐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가상화폐는 국내 금융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규제와 더불어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이 제도화된다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Eun-soo. Park The Bank of Korea (BOK), "Analysis of the FinTech Introduction, Issues," 728, Industrial Bank, p. 12, 2016.
- [2]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s, p. 25. 2015.

- [3] Financial Collections. "Check Block Technology Features and Applied Case Practices." Status of KRW 201 payment trend 250. p. 123. 2015.
- [4] Sang Myung Choi. North Korea's Rationalization and Countermeasures, Police University seminar), p. 104. 2016.
- [5] The Financial Trend Center, "Falling Club Falls and the Rise of the Whole Reflection Conference", Korea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Korea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p. 40, 2016.
- [6] Financial security, "said Finance and Economy Clock-Chinese Blocks (BLOCHAhain), p. 43, 2015.
- [7] Financial Security Sources : Overview of the Block Chain and Use Cases. " Security Study. p. 56. 2015.
- [8]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Block Chain and Bibbie Coin Security Technologies." Security Study 29. p. 74. 2015.
- [9] Ji-yeon Yang, So-hee Kim, Yun-jeong Kim, "Limits of Bitcoin and Current Response. "KIRBIT (KORBIT), " The first step for the technical understanding and introduction of the Block Chain Chairs.", p. 64, p. 1013-1015, 2015.
- [10] Korea Internet Development Agency, the Korea Institute for Phonetics Analyses, said, "Crea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analyz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matters. 2016.
- [11]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NYI) : "The intelligence of drug phishing (KBI)." "NIA Privacy Week." "NIA Privacy Week.". 2016
- [12] LG Corp., "Beyond the Block Chains," "Beyond the Block Chains," LGERI Repor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59, 2016.
- [13] Chang-hun Hur, "Electronic Banking and Financial Security", no. 3, 2016, Financial Security, 2016.
- [14] Doo-hyeon Hong, Byung-il Kim, Hyundai Securities Co.,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troduction to the Block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Joint Block Chain", 31, 165, 2016.
- [15] SBS NEWS, "Police officer, use virtual currency, 12 billion new ' exchange Electronic Banking and Financial Security", 2017.
- [16] Seoul Economy News, "Bitcoin IS Used As Terrorist Funding", 2017.
- [17] Lee Jung Hoon Kim Du Won,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Related to Virtual Curr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8. p. 67, 2017.

황 석 진(Suk-Jin Hwang)

[정회원]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2015년 11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AML 최고위 과정
- 2016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관심분야>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금융범죄, 자금세탁